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정보를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 내에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 신설).
-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 체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5장의2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11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정보를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 내에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의 범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의 기준을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하였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u>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 ----- ----- <u>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u> ----- ----- ----- -----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 ----- ----- <u>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u> ----- -----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	--------------------------

안 제45조의7제1항은 자원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참여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제1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제2호),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제3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45조의7제5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라 “기부”받은 민간의 재산, 토지 등에 대해서만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45조의7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합목적적으로 사용·관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u>“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u> <u>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u> <u>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u> <u>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u> <u>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u>	<u>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u>
--	--	---

또한, 개정안은 제50조의2제2항에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현행법 제50조제1항1)에 따른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현행 조문과 경과

1)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조치의 문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개 정 안	수정의견
부 칙	부 칙
제2조(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u>대</u> 행하고 있는 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u>시</u> 행하고 있는 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 오류 수정, 약칭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화 실)